

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[별표 15의2] <신설 2020. 3. 18.>

공사계획의 승인대상(제49조의2제1항 관련)

1. 제조소

가. 제조소의 신규 설치공사

나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공사

- 1) 저장탱크, 소형저장탱크 또는 액화석유가스용 펌프
- 2) 최고사용압력이 0.2메가파스칼 이상인 열교환기 또는 기화기
- 3) 가스압축기
- 4) 배관(최고사용압력이 0.01메가파스칼 이상인 배관으로서 호칭지름이 150mm 이상이고 그 길이가 20m 이상인 것만을 말한다)

다.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사

- 1) 저장탱크(소형저장탱크를 포함한다)의 최고사용압력 또는 최저사용온도의 변경에 따른 설비의 변경
- 2) 액화석유가스용 펌프, 열교환기, 기화기 및 가스압축기의 최고사용압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공사로서 변경 후의 최고사용압력이 0.0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공사

2. 제조소 외의 가스공급시설

가. 배관

- 1) 본관 또는 최고사용압력이 0.01메가파스칼 이상인 공급관을 20m 이상 설치하는 공사
- 2)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사. 다만,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사로서 해당 공사 구간 안에서 배관의 길이를 줄이거나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20m 미만으로 증설하는 공사는 제외한다.
 - 가) 본관 또는 최고사용압력이 0.01메가파스칼 이상인 공급관을 20m 이상 변경하는 공사
 - 나) 최고사용압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공사[최고사용압력만을 올리는 것을 포함한다. 이하 나)에서 같다]로서 공사 후의 최고사용압력이 0.0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공사

나. 정압기

- 1) 설치공사(계량설비의 설치공사는 제외한다)
- 2) 위치변경공사
- 3) 배관공사(최고사용압력이 0.01메가파스칼 이상의 배관을 20m 이상 설치·증설·교체 또는 이설하는 공사만을 말한다)